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안내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완화)

- 상반기 공고 시 안내드린 신청의 제한(내역사업 구분 없이 상·하반기 1회 신청)
→ 내역사업별(디딤돌·전략형)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하며 본 공고는 하반기에 해당
- 디딤돌·전략형 재무적 결격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적용 예외
→ 디딤돌·전략형 신청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신청 가능
- 동시수행 과제 수(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수행 가능 수 2개 제한) 폐지
→ 동시에 2개 이상 수행 가능(2개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현행 유지)

- ‘20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기업 신청제한

< 졸업제 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신청에 제한.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소부장 일반	시장 확대형 소부장 전략	수출 지향형

단, ‘22년 창업성장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백신원부자재 수행기업은 제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세부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구분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세부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	TIPS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전략형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디딤돌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2. `23년 지원내용

- ☐ (사업목적) 창의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력 강화
- ☐ (지원규모) 총 36억원 내외(60개 내외)
- ☐ (지원대상) 신규 서비스(비즈니스모델)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 ☐ (지원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는 신규 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 * [참고 1] 서비스 연구개발 유형확인
- ☐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등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창업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등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구 분	창업기업 확인내용
창업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2, 3> 창업기업 여부 및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미만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재무결격 예외적용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구 분		일정 및 지원규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접수방식
디딤돌	서비스R&D	'23년 6월 15일 ~ 7월 3일, 18시 정각 접수마감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 (ir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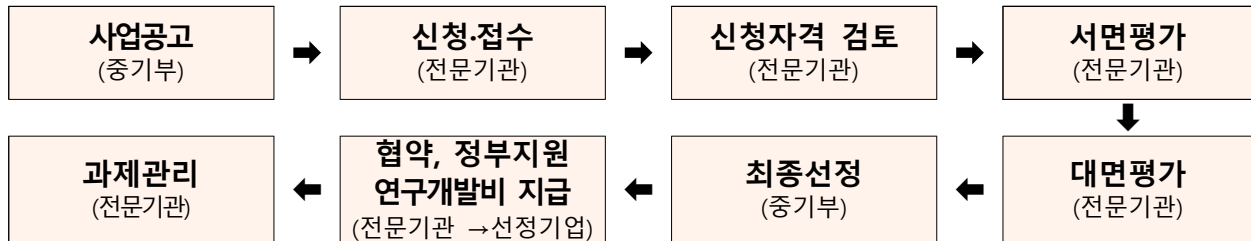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

5. 추진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선정평가 과정 중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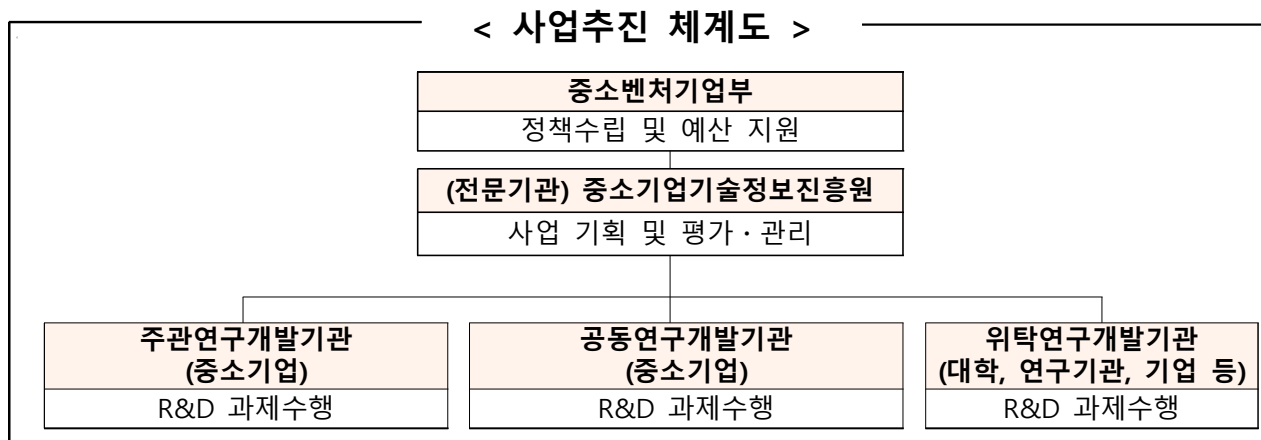
6.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7. 기타사항

☐ (보안등급) 본 공고의 신청과제는 '일반' 과제로만 신청 가능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8.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Ifqd

[붙임]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고 1**서비스 연구개발 유형**

유 형	정 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서비스를 창출 (예: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안전정보 서비스 창출) ▶ 기존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서비스를 개발 (예: 실감형 e스포츠 중계서비스 개발) ▶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신규서비스를 구축 (예: 사기유형에 대한 분석 토대로 결제사기방지 서비스 구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기존 서비스의 품질 향상 (예: 빅데이터를 통한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 품질 향상) ▶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효율화 (예: 물류 추적 플랫폼을 통한 운송체계 효율화) ▶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 (예: 홈페이지 배열체계의 변경 통해 전달체계 새롭게 구축)

참고 2

창업기업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순
예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①대분류(C), ②중분류(C33), ③소분류(C339), ④세분류(C3399), ⑤세세분류(C33999)
 - * 주업종 코드 확인
 - 국세청 주업종 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 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